

# 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 KSC-8305규격에는 플러그, 콘센트의 정격전류가 15A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안전인증/IEC규격에는16A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현KS규격이 안전인증/IEC규격으로 개정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형에 각인을 한번하게 되면 수정 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에 대비하여 16A로 표기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플러그, 콘센트의 정격전류는 KSC 8305에서는 15A, 안전인증에서는 16A 로 되어있으며,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현재 KS 규격을 안전인증규격 등을 고려하여 일치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위해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KS 인증제품의 경우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규격에 포함되지 않은 16A로서 표기할 수 없으며, 개정된 후에는 개정 사항에 대해 인증기관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인증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신제품 인증이 된 품목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여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 절차 및 방법과 신청을 위한 문서 양식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어떤 절차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신제품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061호) 제15조(이의신청)에 따라 처리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제12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내용을 통보 받은 인증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4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검토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⑥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인 및 제4항의 이의신청내용을 통보 받은 인증 받은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⑦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청양식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에서 평가인증(NEP)를 클릭하시면 신제품통합인증요령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